

제1절 각(閣)

1. 삼조어비각(三朝御批閣)

(1) 어지 검교직각(御旨 檢校直閣)

울진 선비 윤사진(尹思進)이 노병으로 오지 못한다 하며 그가 지은 책 『정관치설(井觀癡說)』 3권과 『통서연의(通書衍義)』 1권 잡서(雜書) 1권을 보내온 것을 보니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나 먼저 그 글을 보았노라. 경의 말에 나이 많아 오지 못한다 하니 어찌 강제할 수 있겠는가. 울진 선비 윤사진(尹思進)을 강원도 영동교양관(嶺東敎養官)으로 임명하니 성심으로 가르쳐라. 타도(他道) 교양관(敎養官)은 수령(守令) 칠방(察訪)이 겸직하나 특차(特差)다. 벼슬을 내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서울 교관과 같은 것이며 군사령관의 변방 현지 파견과 같이 현지에서 복직도록 벼슬을 보내노라. 그가 지은 책을 보니 하도낙서(河圖洛書)와 수리(數理)에 정통하고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이기분별(理氣分別)을 해득하였도다. 어찌 그토록 공부하여 알아냈는가. 명문 사대부 집에서도 능히 하기 어렵건만 벽향초야(僻鄉草野)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어찌 기이하고 기쁘지 않으리오. 지금 한번 펴보고 책상머리에 둘 뿐 인즉 특별히 그 사람을 찾아 부르지 않으면 그 책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므로 그 책을 간추리고 뜻을 정리하여 여러 사람이 알도록 힘써야 할지니 그 책을 가두어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권을 도로 내려보내노라. 경은 즉시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사진(思進)과 더불어 십분 알기 쉽게 간추리고 다시 정리 검정하여 두세 권으로 하고 각판(刻板) 또는 필사 간행하여 편이하게 쓰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목판(木板)을 잘 보관하여 자주 간행(刊行)토록 함과 동시에 각 관청에 보내도록 하라.

건륭(乾隆) 57년 정월(正月) 14일[1792년 조선 정조(正祖) 16년 1월 14일]

검교직각 원본(檢校直閣 原本)

제2절 고비(古碑)

1. 석교 고비(石橋 古碑)

평해군 북쪽 10리 월송림 가에 모래바닥의 하천이 있어 바다물과 서로 통해 사시(四時)로 물이 넘쳐 모든 일상생활과 상인들의 통행이 어려웠다. 공사생활(公私生活)에 불편이 없